

현행 전과법상 전과사용료법제의 개선방안

박종수*

차 례

- I. 서 론
- II. 전과사용료의 의의와 법적 성질
 - 1. 전과사용료의 개념
 - 2. 전과사용료의 법적 성질
 - 3. 전과사용료의 도입배경
- III. 국내외 전과사용료제도의 현황
 - 1. 해외 주요국의 전과사용료 제도
 - 2. 국내 법제도의 발전과 현황
- IV. 현행법상 전과사용료의 부과·징수절차
 - 1. 전과사용료의 산정기준
 - 2. 전과사용료의 징수방법
 - 3. 전과사용료의 감면·면제
 - 4. 전과사용료의 체납·징수절차
- V. 현행 전과사용료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전과사용료의 산정·부과기준의 개선
 - 2. 전과사용료 감면·면제제도의 개선
 - 3. 전과사용료의 회계관리제도의 개선
- VI. 요약 및 결어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

I. 서 론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종전 국가가 스스로 부담해오던 전파관리비용의 충당과 기술개발 등 관련 재원의 마련을 위해¹⁾ 전파법상 전파사용료 제도를 도입·운영해오고 있다.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전파사용료 외에도 연구개발출연금, 주파수할당대가, 방송발전기금, 보편적 서비스 손실보전분담금 및 각종 수수료 등 다양하다. 자칫 사업자에 대한 중복부담의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 가운데, 각 통신부담금들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그 정당성과 한계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 중에서도 전파사용료는 최근 융합시대에 접어들어 전파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파관리의 비용을 적정하게 충당하면서도 무선국시설자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심도있는 공법적 검토가 요구되는 범영역이기도 하다.

전파사용료는 비록 수익부담이기는 하지만 부담자간에 형평성이 저해되어서는 아니되며, 그 산정기준이 명확하고 적정할 것을 요하고, 이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도 부담자간의 부담이전 내지 부담전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공정하게 제도화하고 운용할 필요성이 큰 분야이다. 1993년 처음 도입되었고 2000년까지 전파사용료 법제는 많은 개선의 노력이 있어왔지만, 최근까지 새롭게 제기된 이슈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1993년 이래 변화한 현실에 맞지 않게 계속 유지하고 있는 요건이 존재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여전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하에서는 먼저 현행 전파사용료법제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개관해보기 위해 전파사용료의 의의와 법적 성질을 규명해보고(Ⅱ.), 이어 최근까지의 전파사용료법제의 개정내용을 정리한 후(Ⅲ.), 전파사용료의 부과·징수절차를 전파법령에 근거하여 정리하고(Ⅳ.), 이를 바탕으로 현행 법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몇 가지 쟁점별로 정리해보기로 한다(Ⅴ.).

1) 박기환, 전파사용료제도의 도입과 전파진흥을 위한 과제, 정보통신정책, 1993. 1. 16., 34쪽 이하 참조.

전파사용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경제학적 접근²⁾에 기초한 선행연구들은 많이 있었으나 공법적 시각에서의 접근은 아직 없었다는 점에서 이 글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전파사용료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매우 기술적이고 각종 세부적인 계수들을 정치하게 미세조정해야 하는 작업을 요할 수 있다.³⁾ 그러나 이 글에서는 그러한 작업은 생략하고 각종 계수들이 의미하는 바를 중심으로 전파정책과 관련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II. 전파사용료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전파사용료의 개념

전파사용료란 수신전용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무선국의 시설자에게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해 전파법 제68조에 따라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말한다. 현행 전파사용료제도는 전파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전파관리의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이용가능한 주파수의 부족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전파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희소한 국가자원인 주파수의 효율적인 분배와 사용 및 새로운 주파수의 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자 1993년부터 도입하게 되었다.

2. 전파사용료의 법적 성질

전파사용료의 개념과 법적 성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파법상의 다른 유사 통신부담금과의 구별이 필요하다.

-
- 2) 예컨대 조성하, 전파사용료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산업연구 제3집, 1997. 12., 65쪽 이하; 이진창/이승진, 전파사용료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과학 제23호 제3호, 2006. 1., 225쪽 이하; 홍의석 외, 전파사용료 부과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통신학회, 1991; 박상현 외, 정부규제가 이동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 번호이동성제도, 전파사용료 및 접속료를 중심으로 -, 소비자학연구 제15권 제1호, 2004. 3., 185쪽 이하; 장근녕, 전파자원의 가격산정모형 연구,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 제45집, 1998, 147쪽 이하 참조.
- 3) 그러한 분석에 대해서는 장근녕, 전파자원의 가격산정모형 연구,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 제45집, 1998, 147쪽 이하 참조.

(1) 주파수할당대가와의 구별

우선 전파사용료는 주파수할당⁴⁾시의 할당대가와 구별하여야 한다. 현행 전파법제는 전파이용에 대한 대가를 할당단계와 사용단계로 각각 구분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할당대가(Frequenzzuteilungsgebühr)는 최소한 국가자원으로서 공물의 성격을 띠는 주파수를 특정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하여 배타적 이용권을 설정해주는 대가로 부과하는 특허사용료에 해당한다. 반면에 전파사용료(Frequenznutzungsbeitrag)는 전파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과 새로운 주파수 개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자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들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분담금(Beitrag)이다.⁵⁾ 양자는 넓게 전파이용에 대한 대가를 산정하여 부과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일정한 차이를 갖는다. 할당대가는 기간통신사업이나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을 할 수 있기 위한 시장진입비용의 성격을 띠고 할당하는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여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대가성원칙). 그에 따라 할당대가는 비용충당원칙(Kostendeckungsprinzip)에 따라 할당과 관련해 발생하는 대가적 비용을 전가할 수 있음은 물론, 할당에 따른 대가적 이익을 상쇄시키는 기능(Vorteilsausgleich)을 수행한다.⁶⁾ 반면에 전파사용료는 비용충당원칙에 따라 전파관리와 신규 주파수 개발 등에 소요될 경비의 회수에 목적을 두고 관리관청의 행정비용을 그 수익자에게 일정한 단위별로 분담시키는 수익부담(Vorzugslasten)의 기능을 수행한다.⁷⁾

(2) 수수료와의 구별

다른 한편 전파사용료는 전파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도 구별하여야 한다. 이는 이른바 행정수수료(Verwaltungsgebühr)로서⁸⁾ 각종 인

4) 전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할당.

5) Lang, in: Tipke/Lang, Steuerrecht, 19. Aufl. 2008, § 3 Rn. 23 f.; BeckTKG-Komm/Schütz, § 143 Rz. 20 f.; Arndt/Fetzer, in: Arndt/Fetzer/Scherer (Hrsg.), TKG, § 143 Rn. 6 f.; Scheurle/Mayen/Roth, TKG, § 143 Rn. 4 f.

6) Jenny, in: Heun, Telekommunikationsrecht, 2. Aufl., Teil 2 D Rz. 408 f.

7) Holznapel/Enaux/Nienhaus, Telekommunikationsrecht, 2. Aufl. 2006, Rn. 507.

허가의 발령이나 검사업무의 수행 등 특별한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과되는 금전급부의무이다. 전파사용료는 전파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익향유자인 무선국 시설자들에게 부과하여 회수하는 수익자부담의 형태라는 점에서 순수 행정수수료와 구별된다. 현행 전파법은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무선국 개설허가·재허가·변경허가, 무선설비에 대한 검사·형식검정·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의 신청이나 기기변경의 신고, 전자파강도 측정의 신청 등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⁹⁾

3. 전파사용료의 도입배경

1990년대부터 이동전화의 수요폭발이 보여주듯 사회 전반적으로 전파이용이 급증하면서 무선국이 급속히 늘어났다. 이에 따라 각종 관리비용의 상승은 물론, 주파수배분의 전산화, 전파감시의 자동화 등 전파관리 향상에 필요한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수수료 수입만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어려웠다.¹⁰⁾ 이에 따른 부족분은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우정세입에서 충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비조달방식에도 한계가 있었고, 과거 전파에 대한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던 상황이 역전될 조짐을 보이면서 신규전파자원의 개발 및 전파산업의 육성 등 전파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파사용료 제도를 도입하여 전파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진흥을 위한 재원을 전파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전파행정비용부담의 공평성을 도모하고 또한 전파사용에 대해 일정한 대가

8) 공법상 수수료의 요건에 대해서는 박종수, 감독분담금의 법적 성격, 조사연구 Review 특별호 - 금융감독 분담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2007. 3., 75쪽 이하.
 9) 조성하, 전파사용료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산업연구 제3집, 1997. 12., 85쪽.
 10) 수수료를 통한 관리비용 충당율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감소해갔다(출처: 무선관리단, 전파사용료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1. 3., 18쪽 이하).

연도	1987	1989	1991
충당율	25.6%	17.4%	14.3%

지불을 요구함으로써 그동안 무료로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했던 낭비와 비효율을 막고자 한 것이다. 이는 주파수를 할당받고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지출케 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주파수의 조기반환을 유도하는데도 목적이 있었다.

Ⅲ. 국내외 전파사용료제도의 현황

전파사용료는 1991년 그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1993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이래 전파이용의 확대와 무선국의 급증에 따른 관리비용의 증대에 기여하여 왔고, 전파산업의 중요성이 커감에 따라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 진흥재원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

전파사용료는 모든 무선국을 부과대상으로 하여 주파수 이용현황을 반영함은 물론 신규 주파수자원의 개발을 유도하는 것을 부과원칙으로 하여 그동안 수차례의 법개정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법개정은 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투자활성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 추진, 전파이용자의 부담완화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또한 WTO기본통신협상(NGBT) 기준의 반영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해외 주요국에서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현행 전파사용료법제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외 주요국의 전파사용료 제도

(1) 독일

독일에서는 독일통신법 제142조 1항에 따라 주파수의 할당에 대하여 일정한 수수료(Gebühr)를 거둘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이를 더 구체화하는 법규명령을 제정하도록 제142조 제2항에서 수권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연방규제기관인 연방망청(BNetzA)이 검사, 측정 및 타당성조사 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소요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분담금(Beitrag)을 거둘 수 있도록 독일통신법 제143조에서 규정하고 이를 위해 세부적인

사항을 법규명령에 위임하고 있다(동조 제4항). 전자는 우리 전파법상 주파수할당대가에 해당하며 후자는 우리 전파법상 전파사용료에 해당한다. 독일법상의 주파수할당수수료(Frequenzzuteilungsgebühr)는 일정한 행정비용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종의 사용료·수수료(Gebühr)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며, 독일법상의 주파수이용분담금(Frequenznutzungsbeitrag)은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에게 공여되는 행정비용을 그들이 누리는 수익에 상응하여 강제분담시키는 공법상 금전급부의무라는 점에서 분담금(Beitrag)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이처럼 주파수이용분담금은 순전히 비용면에 정향하여 독일통신법 제143조에 의거 유발자부담원칙(Veranlasserprinzip)에 따라 개별 주파수이용자에게 분배되어진다. 이를 산정해내기 위하여 독일통신법 제143조 제2항 제2문 및 제3문에 따라 주파수의 이용과 관련해 매년 발생하는 비용을 계산해내고, 이를 다시 여러 이용자그룹에 분배하여 최종적으로 이들 그룹 내에서 분담금이 충당되도록 한다. 매년 그 해에 부과·징수되어야 하는 주파수이용분담금은 법규명령인 주파수이용분담금령(Frequenznutzungsbeitragsverordnung)의 별표에 상세히 정하고 이 별표의 내용을 매년 경제여건에 맞추어 개정해가고 있다. 그리고 주파수이용자 그룹에는 통신사업자뿐 아니라 방송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모든 주파수이용집단에 대하여 주파수이용에 대한 일정한 강제분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¹¹⁾

(2) 일본

일본은 전파관리비용과 전파의 경제적 가치를 감안하여 산정·부과하는 전파이용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의 전파이용료는 3년을 기간으로 하여 기간 내에 예상되는 무선국수를 고려하여 전체 전파관리비용 규모를 추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이용료를 결정하고, 이를 10개 유형으로 구분한 무선국별 데이터량 비례 부담액과 균등 부담액으로 나누어 무선국별로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11) 이상에 대해서는 Jenny, in: Handbuch Telekommunikationsrecht, 2. Aufl. 2007, D Rz. 408 f.; Geppert/Ruhle/Schuster, Handbuch Recht und Praxis der Telekommunikation, 2. Aufl. 2002, S. 354 f.

즉, 전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A군과 전파감시나 무선국DB운영 등과 관련되는 B군으로 분류하여 전파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1993년 도입되어 3년 단위로 총액을 계산하고 이후 연간 이용료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하여 관리비용이 계산되는 구조이다. 이처럼 무선국별로 전파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파이용료 잉여분은 다음 기간으로 이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특징이다.

일본의 경우 전파이용료 이외에 전파관련 별도의 부담금은 없으며 실제비용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어 방송 및 공공부문에 전파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공공용 중 국가 사용분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소방·방재 등 일부는 전액 또는 50%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방송용에 대해서도 전파이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금액규모면에서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이동통신부분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감면·면제 대상을 축소하여 징수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¹²⁾

(3) 미국

미국에서는 규제기관인 FCC가 제반 규제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규제수수료(Regulatory Fee)를 부과한다고 한다. 이 규제수수료는 TV·라디오 방송사업자를 포함하여 FCC의 규제를 받는 모든 영리사업자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등은 면제된다고 한다. FCC는 매년 규제수수료의 총금액을 책정한 후 이를 서비스 범주별로 분배한 후 다시 각 서비스별로 납부단위 및 단위당 납부액을 결정한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의 산정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FCC가 면허종류에 따라 납부금액을 결정하여 고시¹³⁾하는 방식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용은 규제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으나 효율적 주

12) 이승훈, 일본의 전파사용료제도 관리동향, 정보통신정책 2004. 9. 16., 25쪽 이하; 임동민, 일본의 전파사용료제도 개정 현황 및 시사점, 정보통신정책 2006. 5. 16., 1쪽 이하; 박민수 외, 주파수할당 및 전파사용료 개선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12., 52쪽 이하 참조.

13) 물론 이때에는 고정액, 가입자기준, 매출액기준 방식 등을 사용하고 있다.

파수 사용을 위해 공공용 주파수에 대해서도 이용료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¹⁴⁾

(4) 영국

영국은 전파법에 의하여 행정유인가격(AIP, Administrative Incentive Pricing)을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비경매대상 주파수는 AIP를 적용하여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면 아마추어 라디오 등 일부서비스는 관리비용보전 수준의 금액만을 징수하는 등 서비스군별로 징수액산정의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그 연간부과할 수 있는 금액은 전파법상 Licence Charge Regulation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무선서비스를 11개 군으로 나누고 다시 서비스별로 세분화한 부과액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으며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국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혼잡도에 따라 차등부과하기도 한다.

한편 방송법에 따라서는 Licence Fee가 징수되고 있는데, 이는 방송법에 근거하여 해당연도의 방송규제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만큼 부과·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매년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소사업자는 인구수, 기기수, 채널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기도 한다.¹⁵⁾

2. 국내 법제도의 발전과 현황

우리나라의 초기의 전파사용료는 무선설비별로 지정된 주파수마다 분기별로 허가장에 기재된 전파의 폭 및 공중선전력과 전파의 이용형태 등을 참작하여 일정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부과·징수하도록 하였다(시행령 제119조의11). 당시의 특징적인 사항으로는 모든 무선국을 부과

14) 오연천, 외국의 무선국허가 및 관련 수수료(사용료)등에 관한 비교분석, 정보통신기술연구과제, 1996. 3., 121쪽 이하 참조.

15) 이에 대한 상세는 박민수, 주파수할당 및 전파사용료 개선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12., 52쪽 이하 참조.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이동전화가입자도 전파사용료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게 되었고,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무선설비를 기준으로 지정주파수별로 ㎞ 단위로 부과함에 따라 디지털 전환시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한편 1993. 10. 18.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¹⁶⁾에서는 전파사용료가 1천원미만인 무선국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였다(시행령 제 119조의10).

(1) 1996년 이후

1995. 10. 16.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에서 전파사용료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무선국의 시설자가 당해연도 전파사용료 전액을 1/4분기에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일정금액을 감액하도록 하였으며(제119조의12 제4항), 1996. 12. 31. 일부개정에서는 이동전화 등 대중화된 무선국의 허가절차를 간소화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때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무선국을 이동전화용 무선국, 주파수공용 무선전화용 무선국 등으로 정하고(제56조의3), 종전에는 부과할 전파사용료가 1천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조정하여 2천500원미만인 경우까지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제119조의10 제1항 제3호). 또한 별표 10을 개정하여 이동전화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25% 인하하였다.

한편 1997. 3. 31. 일부개정에서는 이동전화등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산정방식을 종전의 전파사용량에 따른 계산방식에서 정액제로 하고(이동전화: 8천원, TRS: 4천원 등), 이동전화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11% 인하하였다(제119조의11 및 별표 11 신설). 아울러 별표10의 목적계수를 조정하여 디지털방식의 무선설비에 대해서는 0.1, 아날로그방식의 무선설비에 대해서는 0.8의 목적계수를 규정하였다.

또한 1997. 12. 31. 일부개정에서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무선국에 터널 등 지하에 설치되는 이동전화중계기와 버스 등에 설치되는 이

16) 대통령령 제13996호, 1993. 10. 18. 일부개정.

동공중전화 등을 추가하여 이의 설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2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기지국 등의 무선설비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파사용료를 감경함으로써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였으며, 점차 이용이 보편화된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전화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종전 분기당 8천원에서 다시 5천원으로 인하하고 발신전용휴대전화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2) 1999년 이후

1999. 3. 3. 일부개정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통신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전파사용료의 산정방식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즉, 이동하며 사용하는 무선국 등의 분기별 전파사용료(정액)에 관하여 현행 별표11을, 고정형의 기간통신사업자 무선국에 대해서는 지정된 모든 주파수의 합에 대하여 1/10단위로 부과하는 현행 별표9를, 기간통신사업자 이외의 무선국에 대해서는 무선국의 송신설비별로 지정된 주파수마다 부과하는 현행 별표10을 각각 마련하였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동전화 및 개인휴대전화의 전파사용료를 종전 5천원(분기별)에서 3천원으로 인하하였다(제119조의11 및 별표11 내지 별표13).

한편 1999. 9. 30. 일부개정에서는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지국을 공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이 개설한 개인휴대전화용 무선국 등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 등 일부 제도의 개선을 실시하였다.

(3) 2000년대 이후

2000. 4. 1. 전부개정에서는 이동전화가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면제하고, 주파수대역 및 전파의 폭등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을 정하였다(법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 그에 따라 가입자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가입자의 수를 기

준으로 하여 사업자별로 산정하도록 하는 현행 별표8을, 그밖의 기간통신 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에 대해서는 현행 별표9를, 기간통신사업자 이외의 무선국에 대해서는 현행 별표10을, 이동형 무선국 및 임대목적 지구국에 대해서는 현행 별표11을 각각 마련하였다.

2004. 7. 24. 일부개정에서는 IMT-2000 이동통신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무선국에 이동통신용 단말기를 추가하여 신규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파수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파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전파사용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그에 따라 전파사용료 부과기준에 주파수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파특성계수를 추가하였다(현행 별표8).

2004. 9. 17. 일부개정에서는 방송법의 개정으로 새로운 방송매체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 도입됨에 따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개설하는 방송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즉, 지상파방송 및 위성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개설하는 방송국의 명칭을 지상파 방송보조국 및 위성방송보조국으로 하고,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제공을 위하여 위성방송사업자가 개설한 위성방송보조국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기준을 현행 별표9에 마련하였다.

2007년에 들어와서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부과기준 중 가입자수의 산정시 현역병 등으로서 이동전화이용을 정지한 가입자를 제외하도록 하였고,¹⁷⁾ 종래 전파사용료의 일시납부는 1/4분기 징수기간 중의 신청분만 허용되었는데, 그 후에 일시납부를 희망하는 자와 신규 무선국 개설자의 편익도 증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전파사용료의 일시납부를 향상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실시하였다.¹⁸⁾

17) 대통령령 제19968호, 2007. 3. 27. 일부개정.

18) 대통령령 제20427호, 2007. 11. 30. 일부개정.

IV. 현행법상 전파사용료의 부과·징수절차

전파사용료의 부과는 분기별로 부과·징수하며 앞서 개관한 바와 같이 1년간 납부하여야 할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낼 수도 있다.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전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전파의 폭 및 공중선전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산식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신설비 및 예비설비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아니하며, 운용휴지기간 및 운용정지기간은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는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전파법 제68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90조에서는 전파사용료를 무선국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4가지 산정방식으로 나누어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1) 가입자보유 기간통신사업자 개설 무선국

1) 사업자별 산정식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text{사업자별 전파사용료} = (\text{가입자 수} \times \text{단가}) \times \text{감면계수} [1 - (\text{공용화감면계수} + \text{로밍감면계수} + \text{이용효율감면계수})] \times \text{전파특성계수}$$

2) 가입자 수 산정기준

가입자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전파사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가입자 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 전파법령상 ‘가입자’의 개념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불명확할 수 있

지만, 19) 가입자 수는 시점에 따라서도 가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의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금액이 나올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별표8에서는 가입자 수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자별로 매분기초 시작일과 매분기말 종료일의 가입자 수를 합하여 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지원에 따라 입영한 현역병²⁰⁾으로서 무선국의 이용을 정지한 가입자의 수는 제외한다. 이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파사용료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동전화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한 현역병 등의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3) 서비스별 단가

별표 8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를 크게 이동통신(셀룰러, PCS, IMT2000), 휴대인터넷, 무선호출, 주파수공용통신, 위치기반서비스 및 무선데이터통신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하여 가입자당 분기별 단가를 정하고 있다. 예컨대 셀룰러, PCS 및 IMT2000을 포함한 이동통신의 가입자당 분기별 단가는 2,000원이며, 휴대인터넷은 1,200원, 무선호출과 주파수공용통신은 150원, 위치기반서비스는 50원, 무선데이터통신은 30원의 단가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4) 공용화 및 로밍 감면계수와 이용효율 감면계수

전파관리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회소자인 전파의 이용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선설비를 다른 시설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상호접속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정한 감면율을 적용하여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구체적인 감면계수는 공용화율과 로밍율에 따라

19) 예컨대 선박국을 가입자로 볼 수 있는지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20) 병역법 제24조 제2항 또는 제25조 제1항(같은 항 제2호 중 경찰대학졸업예정자로서 전투경찰대에 복무하도록 추천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에 따라 전환복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다.

공용화율 (로밍율)(%)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	50 이상
공용화 감면계수	0.01	0.02	0.04	0.06	0.08	0.10
로밍 감면계수	0.05	0.10	0.15	0.20	0.25	0.30

여기서 공용화율이란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중 다른 시설자와 공중선주 또는 송·수신설비를 공동 사용하는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로밍율이란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의 무선국 중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상호접속계약에 따라 로밍기술이 적용되는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또한 해당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용중인 주파수(FA)당 평균 가입자 수를 기본수용용량으로 나눈 비율(주파수 이용효율)에 따라 일정한 감면계수를 인정하여 전파사용료 산정시 이용효율이 높을수록 전파사용료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감면계수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주파수 이용효율(%)	100미만	100 이상 150 미만	15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250 미만	250 이상
이용효율 감면계수	0.01	0.02	0.03	0.04	0.05

다만 무선호출, 주파수공용통신, 무선데이터통신,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해서는 주파수 이용효율 감면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셀룰러 및 PCS의 주파수(FA)당 기본 수용용량은 500,000명으로 하고, IMT2000의 기본 수용용량은 1,500,000명으로 하며, 휴대인터넷의 기본 수용용량은 700,000명으로 한다.

6) 전파특성계수

주파수스펙트럼은 대역에 따라 전파의 휘절성 등 물리적 특성을 달리

한다. 전파의 가치 또한 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파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하여 2004. 7. 24.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에서는 전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계수를 만들어 전파사용료 산정산식에 반영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전파특성계수이다. 현재는 1GHz 미만과 1GHz~3GHz 미만을 나누어 각각 1.16과 0.81의 전파특성계수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무선호출, 주파수공용통신, 위치기반서비스, 무선데이터통신 및 대가에 의하여 할당받은(전파법 제11조)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파특성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2) 가입자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 개설 무선국 및 위성방송사업자
개설 위성방송보조국

1) 무선국별 산정식

가입자를 보유하지 아니한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개설한 위성방송보조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무선국별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무선국별 전파사용료} = \text{기초가액} \times \text{전파사용량계수} \times \text{서비스계수} \times (1 - \text{공용화감면계수})$$

2) 기초가액과 전파사용량계수

가입자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별로 전파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가액은 250,000원이다. 또한 전파사용량계수는 해당 무선국의 송신설비에 지정된 모든 전파의 폭을 합한 것(전파사용량)과 사용 주파수대역이 대응하는 수치로서 전파법시행령 별표 9에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²¹⁾ 다만 육상이동업무를 하는 아날로그방식의 무선국에 대해서는 아래 계수에 3을 곱한 값을 전파사용량계수로 한다.

21) 아래 표에서 정하는 수치들이 그에 해당한다.

3) 서비스계수

가입자 미보유 기산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의 종별로 그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별단가는 전파법시행령 별표9에서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고정국은 무선국의 종류에 따라 마이크로웨이브용 무선국은 0.5, 가입자회선용 무선국은 0.25, 도서통신용 무선국은 0.05, 그 외의 고정국은 1을 적용하는 반면 위성방송보조국은 0.03의 계수를 적용한다. 그 밖의 무선국은 1을 적용한다.

4) 공용화 감면계수

가입자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의 개설 무선국에 대해서도 주파수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설자의 무선국 중 송·수신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이용효율에 기여하는 경우 일정한 감면율을 적용하여 전파사용료의 부담을 감경하고 있다. 구체적인 감면계수는 전파법시행령 별표 9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용화율이란 해당 시설자의 무선국 중 다른 시설자와 공중선주 또는 송·수신설비를 공동 사용하는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공용화율(%)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공용화 감면계수	0.01	0.02	0.04	0.06	0.08	0.10

전파 사용량 (MHz) 대역	0.1	0.1	0.3	1.5	4	7	10	15	20	30	40	60	80	110	150
	미만	이상 0.3 미만	이상 1.5 미만	이상 4 미만	이상 7 미만	이상 10 미만	이상 15 미만	이상 20 미만	이상 30 미만	이상 40 미만	이상 60 미만	이상 80 미만	이상 110 미만	이상 150 미만	이상
1GHz 미만	1	2	3	5	7	9	12	15	19	23	28	33	38	44	50
1GHz 이상 3GHz 미만	0.7	1.4	2.1	3.5	4.9	6.3	8.4	10.5	13.3	16.1	19.6	23.1	26.6	30.8	35
3GHz 이상 15.4GHz 미만	0.3	0.6	0.9	1.5	2.1	2.7	3.6	4.5	5.7	6.9	8.4	9.9	11.4	13.2	15
15.4GHz 이상	0.2	0.4	0.6	1	1.4	1.8	2.4	3	3.8	4.6	5.6	6.6	7.6	8.8	10

(3) 그 외 일반무선국

1) 지정주파수별 산정식

전파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무선국의 송신설비별로 지정된 주파수마다 분기별로 무선국허가장에 기재된 전파의 폭 및 공중선전력과 전파의 이용형태 등을 참작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부과·징수한다.

$\text{지정된 주파수별 전파사용료} = \text{기초가액} \times (\sqrt{\text{공중선전력} + \text{전파의 폭}}) \times \text{선호계수} \times \text{이용형태계수} \times \text{목적계수} \times (1 - \text{공용화감면계수})$

여기서 기초가액은 2천원이며, 공중선전력은 와트(W)단위로 산정하되 통달 거리를 나타내는 전계강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정전력의 제곱근을 적용한다. 한편 전파의 폭은 kHz단위로 산정하되, 1kHz 미만인 경우에는 1kHz로 하고, 960MHz 이상의 주파수대에서는 전파의 폭이 1MHz 미만인 경우 1MHz로 산정한다.

2) 선호계수

선호계수는 주파수의 이용상 선호도가 높은 주파수대역과 그렇지 아닌 주파수대역의 가치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선호도가 높을수록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이로써 신규개발이 요구되는 주파수대역에 대한 주파수자원의 개발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현행 전파법시행령 별표10에서는 전파의 종류별로 주파수대역에 따라 세부적인 계수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UHF는 300MHz 이상 960MHz 미만의 주파수대역에 대하여 1.5의 계수를, VHF는 28MHz 이상 300MHz 미만의 주파수대역에 대하여 1.3의 계수를, 중단파 이하는 28MHz 미만의 주파수대에 대하여 1의 계수를, 준마이크로파는 960MHz 이상 3GHz 미만의 주파수대에 대하여 0.1의 계수를, 밀리미터파는 30GHz 이상의 주파수대에 대하여 0.01의 계수를 적용하며, 마이크로파는 3GHz 이상 15.4GHz 미만의 주파수대에 대해서는 0.03을, 15.4GHz 이상 30GHz 미만의 주파수대에 대해서는 0.02의 선호계수를 각각 적용한다.

3) 이용형태계수와 목적계수

현행 전파법령상 특정 주파수는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파수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공동이용의 경우와 단독이용의 경우를 나누어 가중치를 달리 적용함으로써 희소자원인 전파자원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자에 비하여 공동이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적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²²⁾ 현재 단독이용의 경우에 대해서는 계수 1을 적용하고, 공동이용의 경우에 대하여는 단독이용의 경우의 10분의 1인 0.1의 계수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단독이용이란 전국적으로 시설자가 특정한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공동이용이란 그 외의 경우를 말한다.

한편 목적계수는 전파행정의 공익목적달성을 위해 전파사용료 산정요소로 반영된 것으로 초기 도서통신과 같이 국민에게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설된 무선국 등에 대해서 가중치를 낮게 적용하는 등 업무별로 적용되는 목적계수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전파법시행령 별표 10에서는 무선향행업무(레이더, 트랜스폰더, 거리측정기, 전파고도계)에 대해서는 0.5의 계수를, 무선측위(탐지 및 표지를 포함한다)업무에 대해서는 0.1의 계수를, 이들을 제외한 그밖의 업무에 대해서는 1의 계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공용화 감면계수

일반무선국에 대해서도 주파수이용의 효율을 증진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시설자의 무선국 중 다른 시설자와 공중선주 또는 송·수신설비를 공동사용하는 무선국이 차지하는 비율인 공용화율에 대해, 10% 미만에 대해서는 0.01을 비롯해 50% 이상에 대해서는 0.10까지 총 6단계의 감면계수를 적용하고 있다.

22) 이진창/이승진, 전파사용료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과학 제23권 제3호, 2006. 11. 232쪽 참조.

(4) 이동하며 사용하는 무선국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개설한 지구국

이동하며 사용하는 무선국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개설한 지구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정액의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한다(전파법시행령 별표11). 즉, 선박 및 자동차 등 이동체에 개설하는 지구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20,000원,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지구국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20,000원, 기타 자가통신을 위해 지구국 또는 이동중계국을 설치한 자가 개설하는 육상이동국을 제외한 그밖의 무선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3,000원의 전파사용료가 부과된다.

2. 전파사용료의 징수방법

전파사용료의 징수는 분기별로 그 사용기간과 징수기간을 범정화하여 이루어진다. 즉, 매분기 종료후 1개월 후, 7일부터 20일까지 징수한다. 분기 중에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분기의 징수기간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징수하고, 분기 중에 무선국을 폐지한 자에 대하여는 무선국을 폐지한 때에 전파사용료를 징수한다.

한편 전파법시행령 제90조 제1항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산정하는 무선국을 제외한 무선국의 시설자는 1년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낼 수 있다. 이 경우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내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전파사용료의 감면·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설자(수신전용의 무선국을 개설한 자는 제외)에게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선국 시설자에는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감면은 크게 전부 면제(또는 감면)와 일부의 감면으로 구분된다.

우선 전파사용료가 전부 면제(또는 감면)되는 무선국 시설자는 다음과

같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
- (2) 방송국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방송국과 『방송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을 내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국
- (3) 허가의제 무선국(법 제19조제2항)
-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중 ㉠ 비상국, 실험국, 아마추어국, 표준주파수 및 시보국, ㉡ 대한적십자사가 시설자인 무선국 및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을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 ㉢ 가입자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 및 위성방송보조국, 그리고 그의 일반무선국으로서 부과할 전파사용료가 3천원 미만인 무선국과 선박국(2MHz 주파수대의 공중선전력 50와트 이하 및 20MHz 주파수대의 공중선전력 25와트 이하), 항공기국(100MHz 주파수대의 공중선전력 10와트 이하), 간이무선국(146MHz 주파수대의 공중선전력 5와트 이하)에 해당하는 무선국, ㉣ 터널, 도시철도(지하에 설치된 부분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지하층 등에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설하는 무선국, ㉤ 홍수의 예보·경보 등 재해예방을 위한 무선국, ㉥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으로서 국가의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무선국

그리고 방송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을 내는 위성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국과 대가를 내고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무선국 시설자에게는 전파사용료의 일부, 즉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한편 전파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가 전파사용료 전액을 미리 내려는 경우 1년간 내야 할 전파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간은 전파사용료 일시납부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1년간으로 한다.

4. 전파사용료의 체납·징수절차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사용료를 내야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전파사용료에 대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받는다. 전파사용료 및 가산금을 내지 아니할 경우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전파법 제68조 제2항)

전파사용료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 법령 등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전파법시행령 제93조) 독촉장의 납부기한까지 수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 징수관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 등을 압류하고, 압류 후에도 체납자가 체납액을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하는 일련의 강제 징수절차이다.

V. 현행 전파사용료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행 전파사용료 법제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투자활성화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 촉진 및 전파이용자의 부담완화라는 차원에서 그간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 점은 최근 전파법령 개정의 동향과 현황에서 충분히 검토하였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새로운 서비스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신규기술들이 등장하면서 전파에 대한 수요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늘어나는 전파관리비용을 충당하고 기술개발·인력양성 등 전파행정의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전파사용료는 이러한 목적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무선국 시설자간 부담형평을 기하면서도 주파수이용의 효율을 담보하고 융합환경하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전파사용료의 산정·부과의 측면과 전파사용료의 감면·면제 측면 및 전파사용료의 회계관리 측면에서의 제기되는 문제점과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전파사용료의 산정·부과기준의 개선

(1) 위성 이용 서비스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체계의 개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위성은 방송 및 통신사업자간 국제통신 등 특수한 목적으로만 사용됐다. 그러나 이처럼 특수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던 위성을 일반인의 이동통신이나 방송에 사용하는 예가 증가 최근 증가하게 되면서 전파사용료의 측면에서도 이를 합리적으로 제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위성을 이용한 이동통신 분야로서는 위성휴대통신(GMPCS)과 국제해사위성통신을 들 수 있다. 특히 GMPCS란 전용 저궤도(LEO: Low Earth Orbit) 위성을 발사하여 전세계를 위성 네트워크로 구축한 후 사용자가 직접 위성과 접속할 수 있는 단말기를 이용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GMPCS와 국제해사위성통신은 현재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로서 위성을 이용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특성으로 인해 일부는 전파법시행령 별표9, 다른 일부는 별표10에 의한 산정기준에 따라 무선국별로 전파사용료가 부과되고 있다. 예컨대 GMPCS 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는 글로벌스타, 코리아오브콤이 있으며,²³⁾ 국제해사위성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는 인말셋이 있다. 또한 현재 코닉시스템²⁴⁾이 GMPCS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신규 선정되어 2009년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서비스들은 위성을 이용하지만 가입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이고,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자(사업자)는 현행 전파법시행령 별표8의 기준을 적용하여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전파사용료를 산정·부과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전파이용의 유형, 부담형평성, 투자활

23) 현재 GMPCS 역무로서 글로벌스타와 코리아오브콤은 관문국에 대하여 각각 별표 9와 별표 10을 적용받고 있으며, 국제해사통신역무로서 인말셋은 관문국에 대해서는 별표 9를, 단말기에 대해서는 별표11(무선국당 2만원)을 적용받고 있다.

24) 코닉시스템은 UAE 위성통신사업자인 Thuraya사 위성을 이용하여 국제적으로 공통분배된 이용위성용 주파수 1.5~1.6GHz대역 중 일부(10채널, 625kHz)를 사용한다.

성화 등을 고려하여 위성을 이용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을 별표8로 일원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별표8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단가가 정해질 것을 요한다. 그러나 현행 전파법시행령 별표8에서의 서비스별 단가표에서는 GMPCS에 대한 서비스단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다. 산정기준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가입자당 분기별 서비스단가를 새로이 추가하여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위성을 이용하는 방송으로는 특히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이하 위성DMB라 한다)를 들 수 있다. 위성DMB는 위성을 통해 정지 또는 이동중에 방송을 시청할 수 있으나 위성의 전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지하 시설물 등에서의 이용은 불가능하다는 약점이 있다. 그리하여 음영 지역이나 지하공간 등에 대해서는 위성방송보조국을 설치하여 수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전파법 제89조 제1항에 의하여 터널, 도시철도(지하), 건축물의 지하층 등에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설하는 무선국은 전파사용료가 면제됨에 반하여, 위성DMB제공을 위한 위성(우주국 및 방송국), 방송센터(지구국), 위성방송보조국(Gap filler)는 전파사용료가 부과되고 있다(전파법시행령 별표 9).²⁵⁾ 한국전파진흥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 현재 위성방송보조국은 9,63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10%는 건물 등의 지하공간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2007년 기준으로 위성방송보조국의 매출액은 1,197억원에 전파사용료는 29억원으로서 매출액 대비 전파사용료 비중이 2.42%로서 이동전화(1.32%)나 GMPCS(0.15%)에 비하여 현격히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위성DMB의 전파사용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동전화와 비교할 때 건물의 지하층에 개설된 위성방송보조국의 전파사용료 부과는 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이러한 위성DMB의 부담수준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위성방송보조국의 부담수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전파법시행령 별표9의 산정기준에서 서비스계수(0.03)를 현 수준에서 이동전화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최소한 위성방송사업자가 건축물의 지하층 등에 설치한 위성방송보조국에

25) 서비스계수를 0.03으로 하므로 산정식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250,000원×전파사용량계수×서비스계수(0.03)×(1-공용화감면계수)”.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도록 부과수준에 관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발전기금의 부과대상도 된다는 점에서 그 전반적인 부담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은 쉽게 알 수 있다.

(2) 마이크로웨이브 대역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의 개선

최근 주파수이용의 활성화 차원에서 고대역 마이크로웨이브 주파수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마이크로웨이브 주파수는 주로 고정 및 이동 방송용 증계와 통신증계용으로 많이 사용되며 국제주파수분배상 3~30GHz 범위에서 분배되고 있는데, 현재 마이크로웨이브로 분배된 주파수 중 3.4~11.7GHz의 저대역은 이용이 집중되어 포화상태인 반면, 20GHz이상의 고대역에서의 이용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고주파수 대역에서는 밀집된 저주파수 대역과 달리 채널당 80MHz 이상 넓은 채널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대역일수록 전송거리가 짧아져 증계기 등 많은 설비가 소요되고, 전파사용료의 부담도 급증하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영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고대역 마이크로웨이브 주파수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고대역 주파수 이용의 유인책으로 전파사용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²⁶⁾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정된 국가자원인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고주파수대역의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마이크로웨이브 증계기 등 관련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국내 장비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웨이브의 전파사용료 부담을 현재보다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00년 마이크로웨이브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이 전파법 시행령 별표10에 도입된 이후 그 산정기준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고주파수대역의 특성과 이 대역에 향후 적용가능한 기술등에 대한 고려를 통해 15.4GHz 이상의 대역에 대한 전파사용량계수를 마련하고, 마이크로웨이브 관련 서비스계수나 목적계수를 새로이 신설함으로써 전파사용료 부담이 완화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26) 임동민, 주요국 마이크로웨이브 대역 전파사용료 현황, 정보통신정책 2008. 12. 16., 41쪽 이하 참조..

(3) 주파수이용형태계수의 문제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의 원칙이 되고 있는 현행 전파법시행령 별표10에 의하면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이용 주파수에 대해 계수 0.1을 적용하고, 단독이용 주파수에 대해서는 계수 1을 적용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시설자가 특정한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공동이용의 경우에 10배의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단독이용과 공동이용의 구분은 주파수 지정시 결정되며, 시설자는 전혀 자발적 선택할 권한이 없으며, 처음에는 공동이용이 적용되어 계수 0.1을 적용받다가 동일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다른 시설자가 없어지게 되면 하루아침에 계수 1을 적용받게 되어 전파사용료 부담이 갑작스럽게 10배가 인상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시설자의 과도한 전파사용료 부담이 야기되고 사전적이고 안정적인 설비운용이나 투자계획이 불가능한 문제가 야기된다. 이용형태계수의 도입취지는 공동이용을 장려하고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의미를 가졌지만, 이 제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역으로 타시설자의 존재 여하에 따라 급격한 부담수준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면 차제에 이용형태계수제도의 폐지 또는 보완장치의 마련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 전파사용료 감면·면제제도의 개선

전파사용료는 비록 반대급부성을 띠는 수익부담의 형태이지만 부담자 간에는 공평한 비용분담이 보장될 것을 요한다는 점에서 그 감면 또는 면제사유 또한 법이 엄정하게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전파사용료의 감면·면제에 대해서는 전파법시행령 제89조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감면·면제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있다면 추가·신설의 필요성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1) 육상이동국의 감면·면제 검토

전자와 관련해 논의될 수 있는 것으로는, 현행 전파법시행령 별표11의

이동하며 사용하는 무선국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지구국의 분기별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면 제1호와 제2호에서 선박 및 자동차 등 이동체에 개설하는 지구국과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지구국에 대해서 20,000원의 정액 전파사용료를 부과하고, 제3호에서는 제1호와 제2호 외의 무선국에 대해 3,000원의 정액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그런데 제3호에서는 괄호속에서 ‘자가통신을 위하여 기지국 또는 이동중계국을 설치한 자가 개설하는 육상이동국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과연 이 괄호부분이 뜻하는 법적 의미가 전파사용료의 감면·면제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전파법에서는 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에 대해서만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산정기준을 정하는 시행령 별표에서 감면·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문제되는 것이다. 만약 이 괄호부분이 전파사용료의 감면·면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시행령 제89조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자가통신의 육상이동국에 대해서 무조건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이다. 시행령 제89조의 전파사용료 감면·면제의 근본취지는 공익이나 공공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파사용료를 감면·면제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건축현장, 선박 건조 등 일반 자가통신 육상이동국은 공공복리의 증진 측면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전파사용료 부과면제를 획일적으로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택시TRS와 같이 대중교통에 기여하는 면이 있는 육상이동국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타의 육상이동국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원칙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재난지역 시설자의 전파사용료 감면 문제

한편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 고성 지역 산불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나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일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재난극복을 위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전파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지만 특별히 전파법령상 재난지역의 시설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면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실현하기 어려웠다. 차제에 시행령 제89조에 감면·면제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다만 어떤 범위의 시설

자에 대하여 감면·면제를 실시할 것인지와 기간통신사업자도 그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3) 지상파방송국에 대한 전파사용료 부과 문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서 향후로는 사업자 규제와 관련해서도 수평적 규제의 관점이 많은 부분에서 종전과는 다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 중에서도 사업자간 통신부담금의 부담형평성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현재 이동통신사업자는 연구개발출연금 외에도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는 방송발전기금에 대한 출연과 더불어 역시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단지 방송발전기금만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서 융합환경하에서 사업자간 부담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전파사용료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같은 콘텐츠를 송출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는 전파사용료의 납부면에서도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한다는 이유로 전파사용료 납부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사업자간 부담형평성의 회복을 위해서는 향후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비용충당원칙(Kostendeckungsprinzip)에 부합한 전파사용료를 부담하도록 전파법제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견해에 따라서는 방송국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 근거로서 방송의 공익성을 주장할 수 있다. 즉, 비영리 방송국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뿐더러 광고방송을 하지 않기 때문이며, 그 외의 방송국은 예컨대 문화·예술의 진흥 등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이미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전파사용료 부담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의 공익성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점과 방송도 비용충당원칙과 수익부담원칙에 기반하는 전파사용료제도의 기본취지와 조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²⁷⁾

27) 同旨: 박기한, 전파사용료제도의 도입과 전파진흥을 위한 과제, 정보통신정책, 1993. 1. 16., 48쪽.

3. 전파사용료의 회계관리제도의 개선

전파사용료가 부과·징수되면 그 수입금에 대한 회계관리가 필요하다. 전파법상 전파사용료 수입은 전파관리의 행정비용을 충당하고 전파관련 기술개발 등의 용도로 쓰여질 것을 예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가 거둬들이는 수입금을 특정한 목적으로 한정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회계관리방법은 특별회계나 기금의 방법이다. 특별회계는 통상 해당 특별회계법률을 단행법으로 제정함으로써 설치하고, 기금은 당해 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법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방법으로 설치된다. 전파사용료는 과거 통신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되어 관리되었다가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연구개발출연금, 주파수할당대가와 더불어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귀속되어 관리되었었지만, 현재는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나 기금과는 달리 그 사용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귀속된 금액은 어떠한 국가가 어떠한 용도로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결국 전파사용료가 일반회계에 편입된다 함은 전파사용료 수입액이 전파관리비용이나 전파관련 기술개발 등에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며, 이는 비용충당원칙과 대가성원리에 터잡는 전파사용료의 기본 성격과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이다.

더욱이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상황에서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가 관장하게 됨으로써 융합의 실질화와 방송통신융합 미디어기술 및 인프라를 선도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재원의 부족으로 제대로 역할수행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가칭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통합하고 그 기금운용주체도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파사용료의 수입금액을 이러한 통합된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귀속되도록 회계관리체계를 개편하여야 한다.²⁸⁾

28) 같은 의견으로는 유승훈, 방통융합시대, 기금도 통합해야, 디지털타임스 DT광장, 2008. 12. 1.자 기사 참조.

특별회계나 기금은 이른바 칸막이식 재정운용을 불가피하게 하는 점에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전체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나 기금을 새로이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고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특별회계나 기금도 평가를 통해 존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것이 최근의 재정법적 논의의 결론이다.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합하는 것은 이러한 최근의 재정법적 시각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한 결론이라고 평가된다.

국가의 부담금 수입에 대하여 특별히 법령상 그 귀속이나 용처를 규정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일반회계로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 법리인 만큼, 새로운 회계관리체계하에서는 전파사용료의 수입이 방송통신발전기금에 귀속됨을 명확히 하여 기금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전파관리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그 법상 종전 방송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합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신설하고,²⁹⁾ 그 재원 목록에 전파사용료를 명시해주어야 할 것이다.³⁰⁾ 다만 이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이라는 새로운 기금의 신설을 전제로 하는 방안이므로 국가재정법도 개정되어 동법 별표2에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률의 목록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추가되어야 한다.

VI. 요약 및 결어

이상 전파사용료 법제의 현황과 그 필요한 법제개선방안에 관하여 몇 가지를 정리하여 보았다. 전파는 방송과 통신 양영역에 걸치는 중간자 역할을 하는 점에서 방송·통신의 융합시대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전파는 유한한 자원으로 공물로서의 특성상 주

29) 방송통신발전기본법(안) 제24조 이하 참조.

30) 현재 제정안을 살펴보면 기금의 재원으로 전파사용료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파수할당이라는 특허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배타적 이용권을 부여하고 그 할당단계와 사용단계에서 각각 전파에 대한 이용가치를 파악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전파사용료는 진입가격의 성격을 갖는 주파수할당대가와는 달리 사용단계에서의 수익부담으로서, 전파관리의 비용충당과 전파관련 연구개발의 소용재원으로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다만 수익부담의 성격을 띠더라도 전파사용료는 부담자간에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융합시대에 있어서 새롭게 제기되는 전파수요에 적응하여 관련 기술발전과 투자활동을 유인해야 하는 사명을 안고 있다. 전파사용료는 그 법적 성질에 부합하게 가급적 전파관리비용의 충당에 국한하여 충분히 낮춤으로써 무선국 시설자들의 부담을 최대한 배려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재원도 통합된 방송통신발전기금에 축적됨으로써 향후 융합의 실질화를 주도하고 방송통신분야의 국제경쟁력과 국력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융합시대가 도래한 상황하에서 전파사용료제도를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공평과 효율이라는 어찌 보면 상호 상충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이념적 가치를 기반으로 필요한 제도개선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기본 생각하에 몇 가지 개선점을 지적해보았다. 이러한 사항들은 지속적인 법령개정작업을 통해 차근차근 반영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물론 감면·면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장기간 감면이나 면제혜택을 누려오던 분야를 하루아침에 부과대상으로 강제 전환시키는 것은 무선국 시설자들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유예기간을 두어 경과조치를 병행하는 것을 합리적일 것이다. 전파에 관한 좀 더 심도있는 공법적 연구와 관심이 정책과 입법 모두에서 절실한 때이다. 전파사용료제도의 합리적인 자리매김을 통해 방송과 통신의 외형적 융합이 실질적 융합으로 도약하고 잠시 주춤한 IT 분야 국가경쟁력이 더 한층 제고될 것을 기대해 본다.

주제어 : 주파수, 전파사용료, 주파수할당대가, 공평, 효율

참 고 문 헌

- 박기한, “전파사용료제도의 도입과 전파진흥을 위한 과제”, 「정보통신정책」, 1993.
- 박상현 외, “정부규제가 이동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 번호이동성제도, 전파사용료 및 접속료를 중심으로 -”, 「소비자학연구」, 제15권 제1호, 2004.
- 이건창/이승진, “전파사용료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과학」 제23호 제3호, 2006.
- 임동민, “주요국 마이크로웨이브 대역 전파사용료 현황”, 「정보통신정책」, 2008.
- 장근녕, “전파자원의 가격산정모형 연구”,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 제45집, 1998.
- 조성하, “전파사용료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산업연구」 제3집
- 홍의석 외, “전파사용료 부과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통신학회, 1991.
- Tipke/Lang, *Steuerrecht*, 19. Aufl. 2008
- Arndt/Fetzer/Scherer(Hrsg.), *TKG Kommentar*, 2008
- Geppert/Piepenbrock/Schütz/Schuster, *Beck'scher TKG Kommentar*, 3. Aufl. 2006
- Holznagel/Enaux/Nienhaus, *Telekommunikationsrecht*, 2. Aufl. 2006
- Scheurle/Mayen, *Telekommunikationsgesetz Kommentar*, 2. Aufl. 2008
- Heun(Hrsg.), *Handbuch Telekommunikationsrecht*, 2. Aufl. 2007

Reform des Instituts von Frequenznutzungsbeiträge - Zur Gleichheit und Effizienz in der Frequenzverwaltung -

Park, Jong-Su*

Für Entscheidungen über die Zuteilung eines Nutzungsrechts an Frequenzen erhebt die KCC Gebühren und Beiträge nach Maßgabe des koreanischen Frequenzgesetzes. Dieser besteht in einem jährlichen Beitrag zur Deckung der Kosten für Verwaltung, Kontrolle und Durchsetzung von Nutzungsrechten bei Frequenznutzungen. Zu dieser Beitragspflicht werden all diejenigen herangezogen, denen Frequenzen zugeteilt worden sind. Heute bilden die Aufgaben der Frequenzverwaltung einen wichtigsten Kernbereich der öffentlich-rechtlichen Regelung des Telekommunikationssektors. Die Frequenznutzungsbeiträge sollen nach dem koreanischen Frequenzgesetz rein kostenorientiert nach dem Veranlasserprinzip und dem Kostendeckungsprinzip erhoben und verteilt werden. Die für das laufende Jahr anfallenden Beiträge sind in mehrerer Tabellen im Anhang der Frequenzgesetzdurchführungsverordnung, die fast jährlich aktualisiert wird, wiedergegeben. Unter der Situation der Konversion von Funk und Telekommunikation müssen die Frequenzen eine größere Rolle als bisher spielen. Um ein sog. Funk-Chaos zu vermeiden und die effiziente und chancengleiche Nutzung von Frequenzen zu gewährleisten, gehört es zu den Kernbereichen der hoheitlichen Telekommunikationsverwaltung. Im Rahmen der Diskussion zur Reform der Frequenznutzungsbeiträge müssen die Idee der Gleichheit und Effizienz berücksichtigt werden. Aus dem Gleichbehandlungsgrundsatz folgt, dass die Kosten den einzelnen Nutzergruppen so weit wie möglich aufwandsbezogen zugeordnet werden.

Key Words : Frequenz, Frequenznutzungsbeitrag,
Frequenzzuteilungsgebühren, Gleichheit, Effizienz

* Professor Dr. jur., juristische Fakultät der Korea Universität.

